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1
----------	-------

발의연월일 : 2021. 8. 31.

발 의 자 : 이용선 · 김교홍 · 김승원
서영석 · 윤준병 · 이용빈
임호선 · 조정훈 · 허종식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업들은 ESG 요소를 협력사 선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제품 및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추세임.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급망 선정에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화를 추진중임.

전세계적으로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들이 빠르게 만들어져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으나 자율조항이다 보니 그 5년이 지났음에도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1항3호),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3항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정하고”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며 공정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달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사회적 책임 장려)”를“(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조달 장려)”로 하고, 같은 조 중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조달”로,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를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달절차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사회적 가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을 충

족하는 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u>공정하고 효율적으로</u>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u>사회적</u>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u>사회적·환경적</u>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며 공정하고</u>----- -----.</p> <p>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조달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u></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조달 장려) --<u>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조달</u>----- ----- -----<u>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u> <u>등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반영</u></p>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나. (생략)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달절차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사회적 가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② ~ ④ (생 략)

다.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